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시 결선투표 도입 〉
■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19호)
■ 천하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3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박성준의원안], [천하람의원안]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5
2.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6
3.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10
4. 종합 검토	12
[참고자료] 조문대비표	14

[박성준의원안], [천하람의원안]

I. 제안경위

1. 박성준의원안

가. 제 안 자 : 박성준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4. 8. 7.

다. 회 부 일 : 2024. 8. 8.

2. 천하람의원안

가. 제 안 자 : 천하람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8. 21.

다. 회 부 일 : 2024.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박성준의원안

제안이유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는 후보자가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후보자보다 많이 득표하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당선인 결정은 용이하나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각각의 선거일 후 7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투표는 선거일후 3일째 되는 날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등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다.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7조의2 신설).

2. 천하람의원안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국회 뿐만 아니라 학계와 민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두 번의 선거에 따른 비용 과다 발생과 선거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하고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결선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안 제191조제1항,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9 신설 등).

나.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함(안 제194조의6 신설).

다.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
회에 한정함(안 제194조의8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들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들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천하람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함)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결정 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득표제”를 채택하고 있음.¹⁾

개정안에 따라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각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게 됨.

개정안들에 따르면 결선투표는 각 선거일 후 7일째 되는 날 실시하고, 그에 따라 각 선거기간이 7일씩 증가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는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등은 각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게 됨

1)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현행 및 박성준의원안, 천하람의원안 비교>

	현행	박성준의원안	천하람의원안
결선투표일	-	선거일 후 <u>7일</u> 째 되는 날	선거일 후 <u>7일</u> 째 되는 날
선거기간	대통령선거: <u>23일</u> 지방자치단의 장 선거: <u>14일</u>	대통령선거: <u>23일</u> 지방자치단의 장 선거: <u>14일</u>	대통령선거: <u>23일</u> 지방자치단의 장 선거: <u>14일</u>
결선투표 도입 시 선거기간	-	대통령선거: <u>30일</u>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u>21일</u>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 <u>21일</u>

2.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법리적 측면에서, 헌법 개정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 측면에서 선거일정 및 선거비용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 나누어 검토함.

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헌법 개정사항인지 여부

<관련 헌법규정>

-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먼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법률 개정사항이라는 견해의 주요 논거로는,

첫째,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선거 당선인 결정방식으로 상대다수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다수제가 ‘헌법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둘째, 「대한민국헌법」 제67조제5항이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였으므로,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만의 개정으로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가능하며,

셋째, 「대한민국헌법」 제67조제2항은 결선투표방식을 규정하였다기보다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대통령결정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

다음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헌법 개정사항이라는 견해의 주요 논거로는,

첫째, 「대한민국헌법」이 제67조제2항과 제3항을 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선거에서 1표라도 많이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상대다수대표제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둘째,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그 경우의 수가 극히 희박한 동수 득표의 경우까지 상정하여 국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매 선거마다 예상되는 결선투표제를 직접 규정하지 않은 것은 상대다수대표제를 전제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셋째, 연혁적으로도 우리 헌법은 결선투표제를 상정할 경우 「대한민국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왔는바, 과거에 국회 또는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일 때 결선투표제를 규정하였고, 직선제 하에서는 결선투표제를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학계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먼저 「대한민국헌법」 제67조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며,²⁾ 현행 「대한민국헌법」상 대통령선거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이 헌법개정사항인지 법률사항인지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선투표를 법률로 도입하게 되면 대선결과에 대한 불복 등 선거 이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고려대 이준일교수, 고려대 장영수교수, 서울시립대 김대환교수, 아주대 이현환교수, 연세대 이종수교수, 연세대 손인혁교수, 동아대 조재현 교수, 경북대 신평교수, 영남대 이부하교수, 전남대 정문식교수 등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17. 1. 26.)

나. 외국의 입법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실시 중인 국가는 상당히 많은데,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핀란드가 대표적이고,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를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이집트, 가나, 세네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있음.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외국 사례>

대륙 구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국가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몽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중동	이란, 시리아, 터키, 예멘
아프리카	알제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이집트,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유럽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핀란드, 프랑스, 리투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중·남·북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니카라과, 페루, 우루과이
오세아니아	키리바시, 팔라우

출처: CIA. World Fact book 2020. 'EXECUTIVE BRANCH.'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fields/312.html>
(검색일 2020.3.23.)

선거연수원, 각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비교연구, 2020, 12면에서 재인용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헌법 제7조에서 대통령은 유효투표의 절대과반수 획득에 의하여 선출된다고 하여 절대다수대표제를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헌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은 유효투표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고 절대다수대표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핀란드의 경우에도 헌법 제54조에서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결선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가 중 대부분은 헌법에서 명문으로 절대다수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³⁾

다만,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헌법에서 대통령선거에 관한 절차를 정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선거법과 선거권보장법에 이를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법에서는 1차 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2차투표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⁴⁾

3.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선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⁵⁾ 이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

3) 자료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17. 1. 26.

4) 러시아 헌법 제81조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보통·평등 및 직접 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러시아연방국민이 6년 임기로 선출한다”고 정하고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는 것과는 다름(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17. 1. 26.).

제 도입은 헌법개정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짐.

다만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려는 결선투표제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결선투표제를 실시 중인 국가로는 프랑스와 독일을 들 수 있고, 프랑스는 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과 데파르망의 지사는 중앙에서 파견하며 가장 작은 단위인 코뮌 시장의 경우 1차 혹은 결선 투표에서 절대과반을 득표하는 비례명부의 대표가 맡도록 하고 있음.

독일은 자치단체의 장은 대도시 자치주 외에 13개 일반주에서 모두 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되고 그 중 10개 주에서 상위 2명이 결선투표(2차 투표)를 실시하는 절대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제 외국 사례>

대륙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결선투표제 도입국가
유럽	프랑스, 독일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종합 검토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세력간의 협상 또는 거래에 의하여 사실상 강요되었던 후보단일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결선투표제는 국민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국민주권주의에 보다 충실한 선거제도가 될 수 있으며, 절대다수의 득표가 확보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임.

다만, 결선투표제에 대하여는 후보자의 난립과 정치분열의 조장, 후보 간의 연대와 제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의 왜곡이라는 문제점 또한 제기 가능하다는 점, 현행 「대한민국헌법」상 결선투표제 도입이 헌법개정사항인지 법률사항인지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도입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출 방법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지만,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사항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점, 대통령 선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대통

령선거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하거나, 개헌 절차에 준하는 정도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결투표제의 효과성을 둘러싼 찬반 견해와 도입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 만큼,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 제도 도입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참고자료]

<조문대비표>

현행	박성준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결선투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유효투표의 최고득표를 얻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다음 순위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후보자 전부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선거기간) ①選舉 別 選舉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제33조(선거기간) ①---
1. 大統領選舉는 23日 <단서 신설>	1. ----- 23일. 다만, 제187조 의2제1항에 따른 대 통령 결선투표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 30 일
2. 國會議員選舉와 地 方自治團體의 議會 議員 및 長의 選舉 는 14일 <단서 신 설>	2. ----- --14일. 다만, 제191 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 는 경우에는 28일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34條(選舉日) ①任期滿 了에 의한 選舉의 選 舉日은 다음 各號와 같다.	第34條(選舉日) ①----- ----- ---
1.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87조의2제1항 에 따른 대통령 결 선투표는 선거일 후 7일째 되는 날
2・3. (생략) <신설>	2・3. (현행과 같음) 3의2. 제191조의2제1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

	<u>체의 장 결선투표는</u> <u>선거일 후 7일째 되</u> <u>는 날</u>
<u><신 설></u>	4. <u>제187조의2제1항에</u> <u>따른 대통령 결선투</u> <u>표의 사전투표일은</u> <u>제1호에 따른 대통</u> <u>령선거일 후 3일째</u> <u>되는 날</u>
<u><신 설></u>	5. <u>제191조의2제1항에</u> <u>따른 지방자치단체</u> <u>의 장 결선투표의</u> <u>사전투표일은 제3</u> <u>호에 따른 지방자치</u> <u>단체의 장의 선거일</u> <u>후 3일째 되는 날</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u>이 법에서 규정하</u> <u>고 있는 선거일은 그</u> <u>성질에 반하지 아니하</u> <u>는 범위에서 제1항제1</u> <u>호의2 및 제3호의2에</u> <u>따라 결선투표를 실시</u> <u>하는 날이 포함되는</u> <u>것으로 본다.</u>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 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는 선거인명부작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 ----- ----- -----

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
거운동은 선거기간개
시일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다만, 제187조의2제1
항에 따른 대통령 결
선투표 및 제191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를 실시하는 경우 선
거인명부는 해당 결선
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선거운동기간) -

--전일까지[제187조의
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 또는 제191
조의2제1항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장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결선투표확정일(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과반
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 날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터 결선투표 전일까
지(이하 “결선투표운

제64조(선거벽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 및 장의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첨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illegible]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결선투
표확정일 후 3일)---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현
행과 같음)

②-----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는 <u>16면 이내</u>로, 국회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서는 <u>12면 이내</u>로, 지 방의회의원선거에 있 어서는 8면 이내로 작 성하고, 전단형 선거 공보는 1매(양면에 게 재할 수 있다)로 작성 한다. ③ ~ ⑤ (생략) ⑥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후단 신설>	----- --<u>16면(제187조의2제1 항에 따른 대통령 결 선투표의 경우 8면) 이내</u>-----<u>12면(제1 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 선투표의 경우 6면) 이내</u>----- ----- -----. ③ ~ ⑤ (현행과 같 음) ⑥----- ----- -----.	----- --<u>16면(제187조의2제1 항에 따른 대통령 결 선투표의 경우 8면) 이내</u>-----<u>12면(제1 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 선투표의 경우 6면) 이내</u>----- ----- -----. ③ ~ ⑤ (현행과 같 음) ⑥ ----- ----- -----. 이 경우 후 보자가 선거공보를 제 출하는 때에는 선거공 보를 전자문서로 변환 한 자료를 같이 제출 하여야 하며, 관할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는 선거공보 전자 문서 자료를 관할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재하여 공개하여야 한 다.
1. 대통령선거	1. -----	1. -----

가.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 보를 포함한다)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 일(제51조에 따 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 록마감일 후 2 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 관리위원회에 제 출하고 당해 선 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 마감일 후 3일까 지,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 는 선거일 전 10 일까지 각각 우 편으로 발송하고,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 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가. ----- ----- ----- ----- -----6 일(제51조에 따 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 록마감일 후 2일, 제187조의2제1항 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는 결선 투표확정일 후 2 일)----- ----- ----- ----- ----- -----3일(결선투표 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날로부 터 3일 전)----- -----10일 (제187조의2제1 항에 따른 대통 령 결선투표의 경우는 제외한 다)----- ----- -----	가. ----- ----- ----- ----- -----6 일(제51조에 따 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 록마감일 후 2 일)----- ----- ----- ----- ----- ----- -----3일-- ----- -----10 일----- ----- ----- ----- ----- ----- -----
--	---	--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생략)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각각 동봉하여 발송한다. ⑦ ~ ⑭ (생략)	----- -. 나. (현행과 같음) 2. ----- ----- ----- -----7일(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결선투표확정일 후 2일)----- -----10일(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의 경우는 제외한다)-----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는(결선투표는 실시하는 날로부터 3일 전)----- -----. ⑦ ~ ⑭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 ----- -----7일----- ----- ----- ----- -----10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 -----. ⑦ ~ ⑭ (현행과 같음)
---	---	--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하는 演說員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에 의하여 選舉運動期間中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용한 演說을 할 수 있다.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 ----- ----- ----- ----- -----선거운 동기간 중 또는 결선 투표운동기간 중----- ----- ----- ----- ----- ----- -----.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 ----- ----- ----- ----- -----선거운 동기간 중 또는 결선 투표운동기간 중----- ----- ----- ----- ----- ----- -----.
1. 大統領選舉 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한 演說員이 각각 1回 20分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11回 이내	1. ----- ----- ----- ----- ----- ----- -----11회 이내(결선 투표운동기간 중 각 1회 이내)	1. ----- ----- ----- ----- ----- ----- -----11회 이내
2. (생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	3. ----- ----- -----	3. ----- ----- -----

候補者が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 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 오 放送別 각 2회 이내	----- ----- ----- ----- -----2회 이내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각 1회 이내)	----- ----- ----- ----- -----2회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결선투표 의 경우 결선투표 운동기간 중 각 1 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市·道知事選舉	5. -----	5. -----
候補자가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 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 오 放送別 각 5회 이내	----- ----- ----- ----- -----5회 이내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각 1회 이내)	----- ----- ----- ----- -----5회 이내 (시·도지사선거 결 선투표의 경우 각 2회 이내)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 음)	② ~ ⑬ (현행과 같 음)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 補者演說의 放送)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 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 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 補者演說의 放送) ① ----- ----- ----- ----- -----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 보자연설의 방송) ① ----- ----- ----- ----- -----

토론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u>선거운동기간</u>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u>3회 이상</u> 2. (생략)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 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u>선거운동기간</u>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u>1회 이상</u>	----- ----- -----<u>선</u> <u>거운동기간</u> 중 또는 <u>결선투표운동기간</u> 중- ----- -----. 1. ----- ----- ----- ----<u>3회 이상(결선투표운동기간</u> 중 <u>1회 이상)</u> 2. (현행과 같음) ②----- ----- ----- ----- <u>선거운동기간</u> 중 또는 <u>결선투표운동기간</u> 중- ----- -----. 1. ----- ----- ----- ----<u>1회 이상(결선투표운동기간</u> 중 <u>1회)</u>	----- ----- -----<u>선</u> <u>거운동기간</u> 중----- ----- -----. 1. ----- ----- ----- ----<u>3회 이상</u> 2. (현행과 같음) ②----- ----- ----- ----- <u>선거운동기간</u> 중----- ----- -----. 1. ----- ----- ----- ----<u>1회 이상(시·도지사선거 결선투표의 경우 결선투표운동기간</u> 중 <u>1회 이상)</u>
--	--	---

2. (생 략) ③구·시·군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u>선거운 동기간 중</u> 지역구국회 의원선거 및 <u>자치구· 시·군의 장선거의 후 보자</u>를 초청하여 <u>1회 이상</u>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 회의 연설시간은 후보 자마다 10분이내의 범 위에서 균등하게 배정 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③----- -----<u>선거운</u> <u>동기간 중 또는 결선</u> <u>투표운동기간 중</u>---- --<u>자치구·시·군의</u> <u>장선거의 후보자</u>---- ----- ---<u>1회 이상(자치구·</u> <u>시·군의 장 결선투표</u> <u>를 실시하는 경우 결</u> <u>선투표운동기간 중 1</u> <u>회)</u>-. ----- ----- -----.	2. (현행과 같음) ③----- -----<u>선거운</u> <u>동기간 중</u>----- ----- ---<u>자치구·시·군의</u> <u>장 선거의 후보자, 자</u> <u>치구·시·군의 장 선</u> <u>거 결선투표의 후보자</u> -----<u>1회 이상</u> -. ----- ----- ----- -----.
④ ~ ⑭ (생 략) 第150條(投票用紙의 政 黨・候補者の 掲載順 位 등) ①・② (생 략) ③候補者の 掲載順位 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録마감일 현 재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는 政黨의 추 천을 받은 候補者, 國 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④ ~ ⑭ (현행과 같 음) 第150條(投票用紙의 政 黨・候補者の 掲載順 位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 ----- ----- ----- ----- ----- -----	④ ~ ⑭ (현행과 같 음) 第150條(投票用紙의 政 黨・候補者の 掲載順 位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 ----- ----- ----- ----- ----- -----

無所屬候補者の 순으로 하고, 政黨의 게재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録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순으로 한다. <단서 신설>	----- ----- ----- ----- ----- ----- ----- ----- ----- -----	----- ----- ----- ----- ----- ----- ----- ----- ----- -----
④ ~ ⑩ (생략)	----- ----- ----- ----- ----- ----- ----- ----- ----- -----	----- ----- ----- ----- ----- ----- ----- ----- ----- -----
第187條(大統領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 ①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有効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하고, 이를 國會議長에게 통지하	----- ----- ----- ----- ----- ----- ----- ----- ----- ----- ④ ~ ⑩ (헌행과 같음) 第187條(大統領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 ① ----- ----- ----- ----- ----- ----- ----- ----- ----- -----	----- ----- ----- ----- ----- ----- ----- ----- ----- ----- ④ ~ ⑩ (헌행과 같음) 第187條(大統領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 ① ----- ----- ----- ----- ----- ----- ----- ----- ----- -----

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1人인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舉權者總數의 3分の 1 이상에 달하여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②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동지에 의하여 國會는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告하고, 지체없이 當選人에게 當選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 ----- ----- ----- ----- -----. <삭제> ③-----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87조의2(대통령당선인 결정의 특례) ①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國會議長이 ----- ----- ----- -----. ④ (현행과 같음)
---	---	---

경우에는 결선투표(이하 “대통령결선투표”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대통령결선투표는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일하여 결선투표 대상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2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대통령결선투표 결

	<u>과 최고득표수가 동일</u> <u>할 때에는 중앙선거관</u> <u>리위원회의 통지에 따</u> <u>라 국회는 재적의원</u> <u>과반수가 출석한 공개</u> <u>회의에서 다수표를 얻</u> <u>은 후보자를 당선인으</u> <u>로 결정한다.</u> ⑤ <u>제4항에 따라 당선</u> <u>인이 결정된 때에는</u> <u>국회의장은 이를 공고</u> <u>하고, 지체 없이 당선</u> <u>증을 교부하여야 한</u> <u>다.</u> ⑥ <u>천재·지변 기타</u> <u>부득이한 사유로 인하</u> <u>여 개표를 모두 마치</u> <u>지 못한 경우에 관하</u> <u>여는 제187조제4항을</u> <u>준용한다.</u>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の 決定・ 公告・통지) ①地方自 治團體의 長 選舉에 있어서는 選舉區選舉 管理委員會가 有效投 票의 <u>다수</u>를 얻은 者 를 當選人으로 決定하 고, 이를 당해 地方議 會議長에게 통지하여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の 決定・ 公告・통지) ①----- ----- ----- ----- -----<u>과반수</u>----- ----- ----- -----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の 決定・ 公告・통지) ①----- ----- ----- ----- -----다수----- ----- ----- -----

야 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② (생략)

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88조제4항 및 제6항-----

-----.

제191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 결정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 . 다만,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88조제2항 및 제6항-----

-----.

득표수가 동일하여 결
선투표 대상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2
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해당 후보자를 대
상으로 실시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결선투표에
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
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의회의장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퇴 또는 사고
로 인하여 후보자가 1
명이 된 때에는 그 득
표수가 유효투표의 3
분의 1 이상에 달하여
야 당선인으로 결정한
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결과 최고득
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의 통지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
를 얻은 후보자를 당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 의 신고) (생략) <u><신설></u> <u><신설></u>	<u>선인으로 결정한다.</u> ⑤ 제4항에 따라 당선 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관하여는 제191조제3 항을 준용한다. 제191조의3(당선인 사퇴 의 신고) (현행 제191 조의2와 같음)	제191조의3(당선인 사퇴 의 신고) (현행 제191 조의2와 같음) 제12장의2 결선투표 제194조의2(결선투표 실 시)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선거에서 유 효투표의 과반수를 얻 은 후보자가 없는 때 에는 결선투표를 실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최 고득표자가 2인 이상 인 때에는 최고득표자 를 대상으로 결선투표 를 실시한다. 제194조의3(결선투표 공 고) ① 지방자치단체
--	--	--

<신 설>

<신 설>

<신 설>

의 장의 선거에서 개표결과 결선투표를 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장에게 통지하고 결선투표를 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결선투표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4조의4(결선투표기간) 결선투표기간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결선투표를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94조의5(결선투표운동기간) 결선투표운동기간은 결선투표기간 개시일부터 결선투표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194조의6(결선투표일)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한다. 이 경우 사전투

<신 설>

<신 설>

표는 실시하지 아니한
다.

제194조의7(결선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거를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
부(거소투표신고인명
부를 포함한다)는 결
선투표에도 효력이 있
다.

제194조의8(결선투표운
동) ① 결선투표운동
이란 결선투표운동기
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거운동
을 말한다.

② 결선투표운동은 다
음 각 호의 따른 방법
에 한정한다.

1. 제65조에 따른 선거
공보. 이 경우 제65
조제6항 후단의 규
정에 따른 관할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
시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2. 제71조에 따른 후보
자 등의 방송연설

<신 설>

3.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94조의9(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선거 결선
투표의 당선인 결정)
① 관할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거 결
선투표에서 유효투표
의 다수를 얻은 후보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하고, 이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퇴 또는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관할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해당 지
방의회는 재적의원 과
반수가 출석한 공개회
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신 설>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 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 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 ----- ----- ----- -----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장이,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선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선투표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94조의10(결선투표 및 개표) 결선투표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제10장 및 제11장을 적용한다.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 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 ----- ----- ----- -----
--	--	---

효력을 가진다. <단서 신설>	----- . 다 만, 제187조의2제1항 에 따른 대통령결선투 표 및 제191조의2제1 항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재외선 거인명부등은 해당 결 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 음)	② ~ ④ (현행과 같 음)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 의 설치·운영) ① 재 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 에 재외투표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조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공관의 대체시설 에 재외투표소를 설치 할 수 있다. <단서 신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 의 설치·운영) ① -- ----- ----- ----- ----- ----- ----- -----설치 · 운영하여야 하고,-- ----- ----- ----- ----- ----- ----- . 다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 의 설치·운영) ① -- ----- ----- ----- ----- ----- -----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 ----- ----- .

<u>설></u> ② ~ ⑨ (생략)	<u>만, 대통령결선투표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의 기간 중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② ~ ⑨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선투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선투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	---	---